

2021학년도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The logo for Dongseo University (DSU) is displayed in a large, bold, red font. The letters 'D', 'S', and 'U' are stylized and connected, with a slight gradient effect.

동서대학교 입학처

목 차

I. 전형일정	3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III. 지원자격	5
1. 지원유형 및 유형별 요건	5
2. 지원자격 인정기준	6
IV. 전형방법	7
V. 원서접수 및 전형료	9
V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9
VII. 제출서류	10
VIII. 수험생 유의사항	11

I.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20.09.23.(수) ~ 28(월) 09:00 ~ 18:00	동서대학교 입학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스튜던트플라자 3층 입학처
서류제출	2020.9.23.(수) ~ 10.8(목)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스튜던트플라자 3층 입학처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면접고사	2020.11.2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고사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합격자발표	2020.12.27.(일)	홈페이지 개별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20.12.28.(월)~30(수)	농협 전국 각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가 등록 기간 내에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최종등록 (잔여등록금 납부)	2021.2.8.(월)~10(수)	농협 전국 각 지점	

▶ 위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재외국민-입학정원2%이내)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 고
인문·사회	글로벌경영학부	2	
	영어학과	2	
	일본어학과	2	
	중국어학과	2	
	국제통상학과	1	
	국제물류학과	1	
	방송영상학과	1	
	광고홍보학과	1	
공학	소프트웨어학과	1	
	정보보안학과	1	
	정보통신공학과	1	
	컴퓨터공학과	1	
	게임학과	1	
	융합전자공학과	1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건축공학과	1	
	토목환경공학과	1	
	건축학과	1	
	신소재화학공학과	1	
	생명화학공학과	1	
	식품영양학과	1	
예체능	영상애니메이션	1	
	디자인학부	2	
	영화과	2	
총인원		30	

- ▶ 총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합니다.

III. 지원자격

1. 지원유형 및 유형별 요건

1) 재외국민(정원 외 입학정원 2% 이내)

- 국내·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지원유형별 요건

구분	유형구분	공통요건	유형별 요건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이내)	영주교포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학생 모두 해외 체류 · 부모의 근무지와 학생의 재학 학교는 동일국가여야 함. · 유형 요건 충족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함.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 (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제출	
	해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상사직 원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제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제출	
	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	외국에서 현지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제출
			자영업	외국에서 자영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해외파견 교직원	외국 파견 사실이 있는 교직원의 자녀 (소속기간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 재직증명서 제출
해외 선교활동		외국 선교활동 사실이 있는 선교사의 자녀 (소속재단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 재직증명서 제출		

② 공통지원자격요건

외국학교 재학형태	구분	최저 해외 재학·체류기간		
		근무	재학	체류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소재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보호자	3년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보호자의 배우자	-	-	
	학생	-	3년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지원자의 재학 기간(고교 1개년을 반드시 포함) 중 겹치는 기간을 재외국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해외근무기간: 해외에서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재직 한 기간

※ 해외재학기간: 보호자의 해외 근무 국가와 동일한 국가 소재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으로 고교1개년을 포함한 중고 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합니다.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정원 제한 없음)

지원 대상	지원자격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급 이상의 TOPIK 성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교육 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2. 지원자격 인정기준

1) 공통사항

① 입학허용기간

- 고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2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없습니다.

②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되며,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 해당국의 초·중·고과정의 학교만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합니다.
- 부정·편법·약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 학년/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이 또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 동일학교(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발생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약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G2-2로G4-2
대체가능

중복학기G7-1로G9-1
대체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
한 누락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 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③ 기간인정기준

- 부모의 근무기간,거주기간,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 재학기간, 근무기간, 거주 및 체류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재학기간,체류기간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교육부대입정책과-1083(2020.02.20.)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 자격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 2%이내 모집)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3) 전 교육과정 이수자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외체류기간: 방학, 휴일등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해당국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IV. 전형방법

1) 전형반영방법

구분	법령구분	면접고사	서류심사
재외국민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100%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100%

① 재외국민전형 선발원칙(정원 외 입학정원 2% 이내)

- 입학정원 2% 이내 모집인 경우 구술면접을 100% 반영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있을 경우 차점자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모집단위	순위
해당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면접고사 인성/기초소양 점수 우수자 • 2순위 : 면접고사 발전가능성 점수 우수자 • 3순위 :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서류 미비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제출한 서류 등에서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합니다.
- 면접고사 응시순서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전형일정의 중복을 피하여 지원 바랍니다.
- 면접고사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면접고사

※ 면접고사 3일 전,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예비소집 장소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① 면접일시

대상자	분반	예비소집	면접일시
재외국민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오후	2020.11.21.(토) 12:30	2020.11.21.(토) 13:00

②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 필기구

③ 면접내용

- 인성/기초 소양,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다수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3명씩 10분 내외로 구술 평가합니다.

④ 유의사항

-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휴대폰 등 면접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⑤ 면접고사배점

구분	최저점	최고점
점수	900점	1000점

V. 원서접수 및 전형료

▶ 원서접수기간 :2020.09.23.(수) ~ 28(월) 09:00 ~ 18:00 동서대학교 방문 접수

▶ 전형료 : 전형료 면제

▶ 유의사항

-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내용수정,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접수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단, 천재지변, 질병, 기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접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V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 : 2020.12.27.(일)[홈페이지 개별 조회]

▶ 등록금 납부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 2020.12.28.(월)~30(수)
- 잔여(최종)등록금 납부 : 2021.2.8.(월)~10(수)
- 합격에 대한 최종 확인은 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험생이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 등록확인예치금, 잔여(최종)등록금 납부기간 등 모든 전형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든 납부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Ⅶ.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입학정원 2%이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13. 외국학교 조사표(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14. 지원자격심사 신청서(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북한이탈주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 4. 외국학교 조사표(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5. 지원자격심사 신청서(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전교육과정 이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사본 7.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3급이상) 8. 외국학교 조사표(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9. 지원자격심사 신청서(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교육부대입정책과-1083(2020.02.20))

※ 서류 제출 시유의사항

- 지원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별 제출서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 학교 및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소재국 영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입학지원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 한국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국외고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고교성적증명서(졸업학기포함), 졸업증명서(졸업장)에 대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2021.03.12(금)까지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서류 제출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된 서류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Ⅷ. 수험생 유의사항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학생의 전형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전형이라 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를 취소합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합니다.
- 학생은 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중등록 금지사항]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은 지체없이 무효로 합니다.
-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원서제출은 지원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원서의 제출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주소 불명 등으로 초래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학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형기간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처리합니다.

- 구비서류의 지연도착, 구비서류의 미비 또는 판독불가, 번역오류,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두절 (연락처 오기재 등),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우리대학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대학교는 기독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매주 1회 학생채플을 실시합니다.
-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지원자 및 보호자의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형기간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입학처로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접수된 원서 및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전형 및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한 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입력상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학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에 취소합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지원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교생활기록부자료, 환불계좌번호 등
 - 학교정보 : 최종학력, 출신학교명, 재학기간, 졸업(예정)년도, 외국 거주 및 체류기간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학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 확인 필수

- 이외의 재외국민전형 세부 선발 기준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한 후에 지원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확인한 후 입학처[051)320-21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수 외국인 입학문의는 국제교류센터[051)320-20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외 국 학 교 조 사 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	
------	--	----	--	------	--

구분	학교명 및 연락처		학사운용		
1	학교명		학제	()학년부터 ()학년까지 운영	
	주소		학년기간	학년의 시작 - ()월부터 학년의 끝 - ()월까지	
	전화번호		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 겨울방학기간 :	
	팩스번호				
	E-mail		기타사항		
	홈페이지				
2	학교명		학제	()학년부터 ()학년까지 운영	
	주소		학년기간	학년의 시작 - ()월부터 학년의 끝 - ()월까지	
	전화번호		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 겨울방학기간 :	
	팩스번호				
	E-mail		기타사항		
	홈페이지				
3	학교명		학제	()학년부터 ()학년까지 운영	
	주소		학년기간	학년의 시작 - ()월부터 학년의 끝 - ()월까지	
	전화번호		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 겨울방학기간 :	
	팩스번호				
	E-mail		기타사항		
	홈페이지				
4	학교명		학제	()학년부터 ()학년까지 운영	
	주소		학년기간	학년의 시작 - ()월부터 학년의 끝 - ()월까지	
	전화번호		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 겨울방학기간 :	
	팩스번호				
	E-mail		기타사항		
	홈페이지				

1. 재학했던 모든 외국소재 학교를 기재하며, 학교명은 해당학교의 공식명칭을 기입합니다.
2.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예시) 한국 +82-051-320-2115

지원자격심사 신청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지원자격구분	

1.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 (초등학교부터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학교소재지		수 학 기 간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 간	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수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2. 특이사항 (월반,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